

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  
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청원

## 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 2002.12.4.(수)
- 2002년 11월 11일 김문천의원의 소개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(공동대표 : 노영우, 김범추, 곽동철)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
- 충청북도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관한 조례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한
- 청원의 취지를 보고드리면
- 현재 장애인·노인·모자가정(이하 장애인이라 함) 등의 생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으나,
  - 현실적으로 공공시설 등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해준 실적이 크게 저조한 한 바
  -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허가 및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입니다.
- 청원의 주요골자로는
- 자판기 등을 허가·위탁시 1개월전에 자치단체 공보, 일간신문, 인터넷 등을 통해 장애인등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공고하며

- 계약시 장애인등이 우선계약 대상자가 되도록 우선순위를 두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보장하고
- 설치 허가·위탁시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토록 하며
-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계약의 공정성을 기함과
- 직접운영의 의무위반, 관리상의 해태, 위탁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
- 제도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과정 및 위탁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.

다음은 동 청원 내용의 이해를 돋고자 동 조례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
 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일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
  -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(장애인복지법 제38조 등)
- 각 시·도의 동 조례안 제정 현황으로는
  - 광주광역시가 '92년에 동 조례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'95년에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이후 활발하게 동조례의 제정함을 볼 수 있으며(시·도별 제정안 : 별첨)
- 또한 동 조례안의 입법발의 주체를 살펴보면
  -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한 시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있고
  - 집행부에서 발의한 곳은 부산광역시외 9개 시도가 있습니다.

- 현재 동 조례안을 추진중이거나 제정하지 않은 곳은
  - 대전광역시, 충남, 전남, 경남, 제주도 등 5개소이며
- 우리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·사업소와 유관기관(청주·충주의료원)의 11월 현재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은
  - 매점이 6개소로 전부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으며
  - 자동판매기는 총 67대로 이중 장애인이 4대, 일반인이 63대를 각각 운영(위탁 및 자체)하고 있습니다.

□ 다음은 검토결과 요지입니다.

- 상기에서 동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본 바
  - 동 조례안의 제정은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정안을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.
  - 동 조례안 제정 입안시 집행부에서는
    - 장애인과 일반인(단체포함)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시 배분비율과(양자 50% 보장)
    -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시 우선순위의 대상자 내역  
(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, ②미과세대상자, ③저소득자, ④ 중증장애인, ⑤부양가족이 많은자 등)
    - 적용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  
(①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자, ②노인복지법 제21조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, ③모자복지법 제4조에 의한 모자가정의 여성, 국가유공자 등)
    - 매점설치의 면적( $m^2$ )과 계약 보장기간(3년)

- 의무이행사항을 해태 할 경우의 제재사항 명시 등에 대하여는
  - 입안 단계부터 관련단체의 의견과 장애인등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 
취지만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조치하여야 할 것  
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